

2023년 유망스타트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

◆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『2023년 유망 스타트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』 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
부산경제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년 유망 스타트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
- 사업목적 :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창업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 지원
- 모집규모 : 5개사 내외
- 모집기간 : 2023. 4. 10.(월) ~ 4. 25.(화) 18:00
- 지원대상 : 우수인재와 연봉 5,000만원이상 채용을 약속한 부산소재 창업기업
- 지원내용 : 창업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수인재를 유치한 경우 선정 평가를 통해 채용된 역외인재의 체재비, 인건비 50% 지원
-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4,500만원 (인건비 4천만원, 체재비 5백만원)

2 세부 지원내용

- 세부 지원내용
 - 기업 당 우수인재 1명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
 - 인건비 : 연봉의 50%이내(최대 4,000만원)
 - ▶ 6개월 이상~1년 미만 고용 계약 시 계약 인건비 총액의 50% 지원
 - ▶ 봉급, 성과상여금, 정액수당 등 적용 가능
 - 체재비 : 주거비 월50만원 내외(최대 500만원) ※역외 인재 해당
 - ▶ 과제수행기간 지급, 협약서 체결 전까지 부산 거주 여부 확인
 - ▶ 계약자(기업,인재)의 월세 지급 내역 확인

3 신청자격

☑ 아래의 창업기업 지원자격, 우수인재의 요건, 프로젝트의 범위에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

가. 창업기업 지원자격

- ① 부산 소재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(2017.6월 이후 창업기업)
 - ※ 2024년 2차 지원금 지급 시점(24년 6월) 기준 업력 7년 이하 기업이어야 함
- ② 우수인재(신규영입)와 연봉 5,000만원 이상 근무기간 6개월 이상 계약 체결
 - ※ 신규영입 기준 : 공고일 이전 3개월 ~ 공고일 이후 1개월 (단, 협약체결전까지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)
- ③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

나. 우수인재의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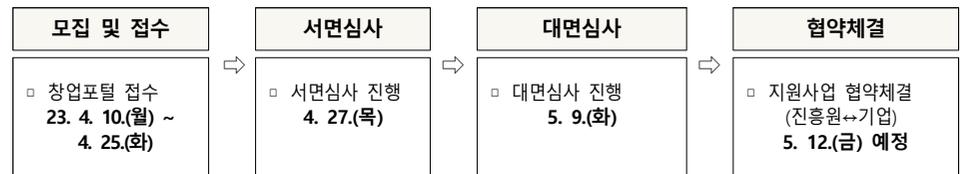
- ④ 관련 기업(직무)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학위(석·박사) 소지자
 - 석사 소지자 관련 경력 : 3년 / 박사 소지자 관련 경력 : 1년
 - 대기업 근무, 유망 ICT 산업분야 기술자 등 우대
- ⑤ 인재 직무는 개발·연구·기술경영·마케팅 등 제한 없음
- ⑥ 부산지역 거주자 및 타시도 거주(근무자)
 - 협약 체결일 기준 부산시 거주(전입일) 등록이 확인 가능한 자

다. 프로젝트의 범위

- ⑦ 프로젝트 분야 : 제한 없음
 - 프로젝트 기한 : 6개월 이상
 - 기업의 현 상황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
 - 제품 개발(디자인 개발), 인사, 재무, 회계 관련 등
 - 단, 프로젝트 책임자는 우수인재여야 함

4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대·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3. 4. 10.(월) ~ 4. 25.(화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부산창업포털(busanstartup.kr)을 통한 신청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

5 신청 시 유의사항

○ 지원금 지급 관련

- 기업의 우수인재에 대한 급여 지급 확인 후 2회씩 나눠서 지급
 - ▶ (1차)23년 12월, (2차)24년 5월
 - ▶ 1년 미만 프로젝트 계약 시 프로젝트 종료 후 1회 지급
- 6개월 이상(협약기간) 채용 유지 ▶ 계약직 근로자 가능
- 인건비 : 연봉의 50%이내 (최대 4,000만원)
 - ↳ 봉급, 성과상여금, 정액수당 등 적용 가능
- 체재비 : 주거비 월 50만원 한도 (최대 500만원) ※ **역외 인재 해당**
 - ↳ 계약자(기업, 인재)의 월세 지급 내역 및 거주 확인 후 지급

○ 우수인재(과제 책임자)의 중도 퇴사

- 성공적인 과제 수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협약 해지, 사업비 지급 불가
 - ▶ (1차 지원금 지급 후 중도퇴사) 기 지원금 환수조치, 협약 해지
 - ▶ (1차 지원금 지급 전 중도퇴사) 협약 해지, 사업비 지급불가
- ※ 단, 6개월 근로계약일 때 6개월 이상 만근 이후 퇴사한 경우 사업비 지급 가능

○ 제외대상

- 부도, 채무불이행, 법정관리, 파산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
-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%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
-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기업
-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·지자체 사업 수혜자
- 해당 사업체(또는 사업장)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(본인·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)
-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락 업종 제외 등
-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 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
○ 신청 및 접수관련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,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

6 문의처

기관명	부서명	연락처
(재)부산경제진흥원	창업지원단	장슬기 주임 051-600-1866 ✉ jsg@bepa.kr